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 
일괄 정비 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됨에 따라 인용 조항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단순 인용 조항 변경
  -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5건
  - \* 「지방자치법」 각 인용 조항 변경,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연령 변경(19세→18세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관련 조례 개정내용은,

제1조(「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16조제1항”을 “제21조제1항”으로, “19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로 한다.

제6조(「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”로 한다.

제8조(「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”로 한다.

제9조(「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1조(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2조(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1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부터 제129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제113조”를 “제126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”를 “법 제126조”로 한다.  
제33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  
제37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  
제40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  
제44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  
제47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  
제53조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  
제56조의2제1항 중 “법 제114조”를 “법 제127조”로 한다.  
제57조제1항 중 “법 제115조”를 “법 제128조”로 한다.  
제60조제1항 중 “법 제115조”를 “법 제128조”로 한다.  
제63조제1항 중 “법 제116조”를 “법 제129조”로 한다.

제13조(「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같은 법 제4조의2제4항”을 “같은 법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4조”로 한다.

제15조(「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6조(「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
제17조(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8조(「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9조(「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
제20조(「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”로 한다.

제21조(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22조(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)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8조”로 한다.

제24조(「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”로 한다.

제25(「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”로 한다.

-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단순한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
-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하는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인 용조항 등 단순개정이 필요한 사항 25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

붙 임: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1부. 끝.